

울산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

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·운영하는 「울산 북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」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양호하고, 양성교육 이수가능하며, 인적성검사에 동의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.

2022년 2월 3일

1) 모집분야 및 자격

1) 아이돌보미

모집인원	사업내용 / 자격기준
아이돌보미 (00명)	-서비스 이용아동의 등·하원 보조, 가정 내 돌봄, 영아돌봄 등 -신체 및 정신건강 양호, 기타 결격사유 미 해당자 ·※ 최종합격자에 한해 양성교육(80시간)과 실습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(양성교육 기간: 3/14(월)~3/25(금), 교육비 20만원)

2) 아이돌보미 결격사유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)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② 지원 방법

구분	서류접수 및 선발
1차 (서류전형)	접수기간: 2022년 2월 14일(월) ~ 2월 23일(수) 18:00 / (10일간) 접수방법: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care.idolbom.go.kr)접수 ▶회원가입→지원 및 양성→모집공고→[울산복구]30기 아이돌보미 모집 문의: 052) 267-3390/ 267-1443 (담당: 오유미)
2차 (면접 및 인적성검사)	아이돌보미 면접 및 인·적성검사 실시 후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- 면접 및 인적성 검사일: 2월 28일(월) 예정 - 최종합격자 발표일: 3월 8일(화) 예정 - 합격자 오리엔테이션: 3월 11일(금) 예정 ※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③ 근무조건

- 가. 근무시간: 채용 후 협의
- 나. 급여기준: 시급 9,170원(주휴수당 등 각종수당 별도)

④ 제출서류

- 가.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
- 나. 자기소개서 1부
- 다. 활동가능시간대 1부
- 라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
- 마. 기타 경력, 자격증,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본 각 1부(해당자 한함)
 -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
 - 자격증사본 1부
 - 경력증명서 1부

⑤ 유의사항

- 가. 센터에서는 신청서류를 배부하지 않으며, 방문 작성은 불가함
- 나.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(증빙자료)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
- 다.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
- 라.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
 - ※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또는 파기함
(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)
- 마.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「아이돌봄 지원사업」 안내에 따름
- 바. **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 면접 및 인적성 검사 당일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유효한 PCR 검사 결과 소지자에 한해 방문 가능함**

⑥ 우대사항

- 가. 영아돌봄이 가능한 자
- 나. 스마트폰 사용 및 어플 활용이 가능한 자